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2017. 5.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개요	1
II.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여부 판단	2
1. 개요	2
2.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	2
3. 판단기준에 따른 Check List	3
III. 공식적 행사 관련 금품등 허용 범위	5
1. 제공 주체	5
2. 판단기준	5
(1)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	5
(2) 일률적으로 제공	6
3. 금품등의 종류	7
IV. 공식적인 행사 관련 후원·협찬 허용 범위	10
1. 후원·협찬을 받는 양태	10
2. 후원·협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0
V. 공식적 행사 관련 언론홍보	13
1. 기자 참석 범위	13
2.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14
VI. 공식적 행사 관련 유의사항	15
1. 주최자 유의사항	15
2. 참석자 유의사항	16
참고 1.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18
참고 2. 공식적 행사 관련 사례	19
참고 3. 관련 판례	21
참고 4. 공식적 행사 관련 FAQ	23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됨

○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됨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6호)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판례가 형성되기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제시

※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임

1. 개요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2.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

□ 행사 목적 및 내용

-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참석 대상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 준비 절차

-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3. 판단기준에 따른 Check List


Check List 1 행사 목적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

※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Check List 2 참석대상

<input type="checkbox"/>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았음
	행사의 목적상 참석자를 특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음

 Check List 3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짐
	비공개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

 Check List 4 준비 절차

<input type="checkbox"/>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input type="checkbox"/>	주최자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음

☞ 공식적인 행사는 Check List의 모든 항목에 체크(✓)한 경우 성립하고, 어느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은 경우 행사는 명목에 불과하고 단순한 사적 모임에 해당

1. 제공 주체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 사유에 해당함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다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 해외에서 ○○외국협회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함께 가는 기자에게 교통비,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

2. 판단기준

(1)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

□ 의미 및 판단기준

-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수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외 개최 행사의 경우 통상 교통, 숙박 등의 가액이 높으므로 해외 개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 범위에 해당

[2] 일률적으로 제공

□ 의미 및 판단기준

-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 가능
 - 행사에서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게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기자 등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사전에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 기업 공식행사의 VIP초청자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3명만 초청하여 교통, 숙박, 음식 등을 제공(×)

3. 금품등의 종류

□ 음식물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6호)
-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원 초과 가능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음식물〉

- ◆ 각자 계산하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허용, 또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 초과 부분만 각자 계산도 허용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2호)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법 제8조제3항제3호)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항)

□ 교통, 숙박 등의 편의

- 교통,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

-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제공 가능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해당 가액 상당의 금전 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움
-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 가능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교통·숙박>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법 제8조제3항제3호)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등의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교통, 숙박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8호)
 - 당사자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제공 시점과 경위, 제공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교통·숙박 등의 편의는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항)

□ 선물

-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제6호)하고 있음
- '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 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됨

〈공식적 행사와 무관하게 수수 가능한 선물〉

- ◆ 참가비, 회비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참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3호)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은 수수 허용(법 제8조제3항제7호)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 ○○국제영화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영화제에 취재 및 리뷰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프레스티켓 제공 허용
 - ◆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
 - ※ 다만,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5조)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가 허용됨(법 제8조제2항)

1. 후원·협찬을 받는 양태

-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양태는 다양함

행사 주최자		구체적 예시
공공기관	단독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 시 협찬 명목의 금품등을 요구
공공기관 민간단체	공동	◆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공동 주최 심포지엄에서 금품등의 협찬을 요구
민간단체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테니스협회가 협회장 명의로 테니스대회를 주최하면서 후원 요청
	공공기관 명의 차용 민간단체	◆ ◇◇연맹이 ○○도지사배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협찬을 받는 경우
	민간단체에 공직자 등이 포함된 경우	◆ 공직자등이 포함된 지역행사 조직위원회, 체육회에서 관내 업체에 행사 관련 협찬 요구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것임

2. 후원·협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반대급부가 없는 후원·협찬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기부금품법, 도서관법, 정치자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방송법 등

< 법률에서 허용하는 후원·협찬(예시) >

법률	내용
기부금품법	국가나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는 허용(제5조)
도서관법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가능(제9조)
정치자금법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가능(제17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18조)
결핵예방법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썸 모금 및 그 밖의 모금 가능(제25조)
장학재단법	한국장학재단은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20조)
식품기부법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가능(제5조)
방송법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 가능(제74조)

□ 반대급부가 있는 후원·협찬 :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허용

-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고 받는 급부의 가치가 균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 제3항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반대급부 부정 판례 >

- ◆ 도의회 의원이 도내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경력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②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③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 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1. 기자 참석 범위

□ 참석 대상의 한정 없이 초청·안내

-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참석 대상을 한정함이 없이 공개적으로 참석대상을 초청·안내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 합리적 이유없이 참석 대상을 특정 사람이나 집단으로 한정하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움

◆ ○○포럼 개최 후 참석자 중 기자만 초청하여 만찬을 하는 경우(×)

◆ ○○기업에서 신상품 와인 홍보를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 1인에게 참석 및 취재를 의뢰하고 항공권, 숙박 등 관련 비용을 지급(×)

□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참석 대상 한정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인 IT기업에서 AI의 현재 기술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전문기자만 초청하는 AI데이 행사(○)

◆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전 박람회인 IFA의 최신 정보를 미리 접하고, 소비자 가전분야 기술발전 동향 및 세계 가전업계 흐름을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가전, IT 분야 매체에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매체의 소속 기자 중 스케줄이 가능한 기자가 참가신청을 하여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국제 가전 박람회(○)

- 여건상 기자단 전체 참석이 어려워 기자단 중 순번제로 참석하여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취재하는 경우도 가능

◆ 정부 부처에서 출입기자단의 GOP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헬기를 제공할 때 출입기자단이 탑승 기자 5명을 선별하는 경우(○)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발전 및 변화 양상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참석자를 과거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로 한정도 가능

◆ 국제구호단체가 특정 국가의 아동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센터 발전과 변화양상 취재를 위해 아동센터 설립 시에 현장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기념식(○)

2.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 통상적 범위에서 제공

- 동일·유사한 행사에 비추어 행사의 장소, 참석자의 범위·지위,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
- 해외개최 행사는 통상 항공권, 숙박, 음식물 제공의 단가가 높으므로 해외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 원자력 발전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공기업이 경수로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국내 특정 지역에 건설하고자 해당 시설이 국내에는 없어 해당시설이 건설되어 있는 해외로 현장시찰을 진행하는 경우(○)

□ 일률적으로 제공

-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 행사에서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없이 기자에게만 교통·숙박 등 관련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음

◆ 해외 방산전시회 참석자 중 정부 부처의 참석자는 비용을 자비(예산)로 부담하나, 정부 부처 취재 기자단에게만 관련 비용 일체를 제공하는 경우(×)

1. 주최자 유의사항

- 행사계획 및 운영, 비용처리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 필요
- 공식적인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 프로그램 중 일부를 친선 도모 등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참석자에게 공문, 메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초청
-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선정

- ◆ 고객사, IT관련 업체의 임직원 등 IT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주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위주로 초대 대상을 정하였을 뿐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대관한 장소의 수용 인원 한계상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
- 행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행사도 가능
- 동일·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된 범위를 고려하여 제공할 것
-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 공식적 행사를 주최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

- ◆ 공공기관이 주최한 공식적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 주최 공공기관 소속 상급 공직자등이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한 하급 공직자등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1호)

2. 참석자 유의사항

- 주최자(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함(법 제8조제2항)
- 행사 프로그램, 참석자,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공식적인 행사에서 금품등의 제공자가 행사의 주최자인지 여부를 확인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가능
 -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다른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제공되는 금품등의 유형이나 가액을 사전에 확인
 - ◆ 공식적인 행사 또는 일률적인 제공이 아닌 경우 선물과 음식물을 함께 받으면 각각의 가액기준 초과여부 및 합산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해당 여부 확인
-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다른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미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이 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자의 신분,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필요

◆ 상담 결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금품등은 반환·인도할 것

참고 1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 Check List 1(행사목적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

○ Check List 2(참석대상)

<input type="checkbox"/>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절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았음 행사의 목적상 참석자를 특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음

○ Check List 3(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짐 비공개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
--------------------------	---

○ Check List 4(준비 절차)

<input type="checkbox"/>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input type="checkbox"/>	주최자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음

○ Check List 5(통상적인 범위)

<input type="checkbox"/>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

○ Check List 6(일률적 제공)

<input type="checkbox"/>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
--------------------------	--

☞ Check List의 모든 항목에 체크(✓)된 경우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공식적 행사로 인정된 사례

-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관광의 안전함을 언론 기사로 홍보하기 위해 관광전문기자협회에 의뢰해 참가 언론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지진 피해상황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브리핑·취재, 민간 업계의 관광 활성화 노력 및 관광객 모습을 취재하는 행사
-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전국 대학교 직원 약 25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
- 전국 시·도 교육청 과학과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 교육부 업무 담당자 및 연수 강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과학 과목 관련 연수
- 지역 기업인과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최신 트렌드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해 1996년 창립하여 매월 1회 호텔에서 지역 기업인, 기관장, 상공회의소, 은행 임직원, 회원 등 300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조찬강연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제포럼
- 글로벌 IT기업이 세계 각국의 기자, 비즈니스 및 기술 선도 기업 및 리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미디어 관계자들(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특파원)을 참석 대상으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글로벌 포럼
- 지역구의원,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기지 및 공급배관 건설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착공식 행사

-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인 IT기업에서 AI의 현재 기술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전문기자만 초청하는 AI데이 행사(참석한 여러 국가 기자들에게 차별 없이 교통, 숙박 등을 제공)
-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전 박람회인 IFA의 최신 정보를 미리 접하고, 소비자 가전분야 기술발전 동향 및 세계 가전업계 흐름을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가전, IT 분야 매체에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매체의 소속 기자 중 스케줄이 가능한 기자가 참가신청을 하여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국제 가전 박람회
- 국제구호단체가 특정 국가 아동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센터 발전과 변화양상 취재를 위해 아동센터 설립 시에 현장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기념식

□ 공식적 행사가 부정된 사례

- 공공기관장이 주관하여 언론사 대상 오만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특정 공직자들에게만 사전에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협회가 지역 건축분야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관리사협회 회원 및 그들의 가족 등 50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축구, 줄다리기, 800m계주, 레크레이션 경기로 구성)

1. 사실관계

행정기관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인 A, B가 정보통신장비업체 C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제공받은 사안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1)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은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

(2)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위반자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는 C가 개발·판매하는 제품에 상응하는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원으로서, 비록 위반자 A, B가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의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반자 C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나. 법 제8조제3항제6호 해당 여부

(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위반자 C가 약 10년 간 200회가 넘게 개최해 온 신기술 홍보 및 문화행사로써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참석자가 정부, 제조, 금융 등 전 산업군의 IT 담당 부서원으로서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않은 점, ③ 영화세미나 관련 초대장이 작성, 배포된 점, ④ 행사내용은 IT 신기술 홍보 및 설명에 이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영화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2) 통상적, 일률적 제공인지 여부

① 식사는 1인당 3만원, 영화는 1인당 2만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화세미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홍보행사로 활용해 온 세미나 방식으로서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영화세미나 개최를 위한 대관료, 식사와 영화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위반자 C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된 점, ④ 영화, 식사 및 기념품 수건이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 일률적 제공에 해당

다. 법 제8조제3항제7호 해당 여부

위반자 C의 로고가 자수된 2천5백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 C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서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

라. 소결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 제공 또는 수수한 식사 등 금품은 법 제8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참고 4 공식적인 행사 관련 FAQ

Q1. 행사의 프로그램이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가 주최자의 업무·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2.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기준은 얼마인가요?

☞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4. 일률적 제공은 언제나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 일률적 제공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법 문언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6.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7.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한 소속 공직자등에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공식적 행사를 주최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Q8.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 범위인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